

대법원 2018. 11. 29 선고 2018다257712 판결 [부당이득금등 반환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8. 11. 29 선고 2018다257712 판결

의정부지방법원 2018. 7. 12 선고 2017나210359 판결

전 문

원고, 상고인A

피고, 피상고인B

판결 선고 2018. 11. 29.

원심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18. 7. 12. 선고 2017나210359 판결

주 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N

이 유

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1항,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

소액사건인데, 상고인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
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
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박상옥

대법관조재연

주심대법관노정희